건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경제문화국장
제출연윌일	2023. 2. 10.

예산실장 심사필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17호 제출연월일 : 2023. 2. 10.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 경 과 장

1. 제안이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기환경 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저공해 조치 대상 범위 확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논산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조~제7조)
- 다. 저공해 조치 대상 범위 확대: 경유자동차 →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 13. ~ 2023. 2. 2.(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충청남도 대기환경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로,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를 "법 제60조"로 한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의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논

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무대상 자동차"를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3.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 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 에 따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를 "명령을 받은 자"로, "이행하여야한다"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동차 정비 권고 등)"을 "(정비 권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 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중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를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이	환 경 과 장	박 승 선		
안	대기관리팀장	손 현 주		
사	담 당 자	이 고 운 (746-593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논산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	제1조(목적) <u>「대기관리</u>
<u>보전법」제58조</u> 에 따라 경유를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
연료로 사용하는 <u>자동차</u> 에 대한	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	전법」제58조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u>자동차 및 건설기계</u>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사용자동차"란 논산시에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u><신 설></u>	1의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
	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u>말한다.</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3
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	법 제60조
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0	,
<u>조</u>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	
한다.	

4. (생략)

- 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 동차는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 월 31일 이전 자동차로서 논산시 에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 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 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조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 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다만, 출고당시 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 •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 동차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논산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 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

4. (현행과 같음)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대상 자 동차 및 건설기계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논산시에 등 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4조(저공	해 조	:치 명	[령) ①)
	<u>대상</u>	자동	·차 및	건설기
계				

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생략)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 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 1.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 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 하다고 판단하는 자동차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 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

-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 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 의 교체
- 2. (현행과 같음)
- 3.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 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저공해 조	치 기간	(1) (1)	
	명령을	<u>받은 자</u>	
	_ 이항	하여야	한
<u>다</u>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 제6조(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 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u>조</u> <u>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u> <u>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u> <u>정하여</u>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u><</u>후단 신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있다.

세7조(재정지원)	
조치를 이행한 지	-동차 및 건설기
<u>계에 대하여</u>	
	<u>이 경우</u>
경비의 지원은 헌	· 차례에 한정한
<u>다.</u>	
<u><삭 제></u>	

붙 임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ㅇ 해 당 없 음
- 2. 비용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ㅇ 해 당 없 음
 - 나. 추계결과
 - ㅇ 해 당 없 음
- 3. 작성자

환경과장 박 승 선

붙임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제28조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58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 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동력 을 발생시키는 장치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 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 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

-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